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2호
개정 1997. 5. 23 조례 제 189호
개정 1998. 8. 3 조례 제 239호
개정 1998. 11. 24 조례 제 249호
개정 1999. 6. 23 조례 제 292호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2. 1. 10 조례 제 397호
개정 2002. 7. 15 조례 제 419호
개정 2003. 2. 17 조례 제 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3. 6. 14 조례 제 454호
개정 2004. 1. 10 조례 제 47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6. 8. 14 조례 제 627호
개정 2007. 10. 16 조례 제 678호
개정 2008. 10. 20 조례 제 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 989호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7. 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8. 9 조례 제1269호
일부개정 2016. 10. 13 조례 제1277호
일부개정 2018. 3. 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 3. 28 조례 제1387호
일부개정 2019. 1.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166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3. 7 조례 제1808호
일부개정 2023. 3.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 11. 1 조례 제200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3. 12 조례 제20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 10 · 16, 2022 · 3 · 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 · 8 · 3, 1999 · 6 · 23, 2002 · 7 · 15, 2006 · 8 · 14, 2018 · 3 · 28>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 8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 8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 5 · 23, 1998 · 11 · 24, 2013 · 6 · 13, 2013 · 10 · 1, 2016 · 7 · 5, 2016 · 8 · 9, 2018 · 3 · 28, 2019 · 1 · 1, 2020 · 12 · 29, 2023 · 3 · 6, 2023 · 11 · 1, 2024 · 3 · 12>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보건소,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 8 · 14>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8·14, 2013·6·13>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6·8·14>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8·14, 2022·3·7>

④ 삭제 <2022·3·7>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6·10·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10·13>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0·13>

[제목개정 2016·10·13]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임기동안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칙 <1997·5·23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3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4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3 조례 제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원회명중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내무전문위원”을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산업전문위원”을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1·10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5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17 조례 제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6·14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0 조례 제47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4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조례 제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6·13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16·7·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민주공원사업소”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부칙 <2016·8·9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3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⑳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을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㉑ 생략

부칙 <2018·3·28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20·12·29 조례 제166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체육지원센터, 이천아트홀”을 “체육지원센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2·3·7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체육지원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을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3·11·1 조례 제200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으로 한다.

부칙 〈2024·3·12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